
	<h2>보 도 자 료</h2>	작성과	재정정책과
	<p>즉시 보도</p> <p>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* 배포 : 12.8.(토) 09:00</p>	담당자	과 장 김성기 사무관 홍성우
		연락처	02-2100-3503 02-2100-3683

지방소비세 확대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

- 국가재원 3조 3천억 원 지방으로 이양 -

- 내년부터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되어,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「부가가치세법」과 「지방세법」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.
-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에서, 현재는 11%가 ‘지방소비세’로 구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.
- 이번 「부가가치세법」과 「지방세법」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11%에서 4%p 늘어난 15%로 조정하는 것이다.
- 이를 통해, 내년에만 약 3조 3천억 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재정에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.

-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「재정분권 추진방안」에 의하면, 지방 소비세율을 내년 15%로 우선 인상한 후, 더 나아가 2020년에는 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과 연계하여 21%까지 인상할 계획이다.
-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약 8조 4천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되고,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된다.
- 또한 2022년까지 관계부처,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세 대 지방세 7대 3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지방의 늘어난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